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

발의연월일: 2024. 5. 30.

발 의 자: 강유정·김영진·김영배

강선우 · 김한규 · 서영교

장경태・박 정・박희승

문정복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성이 없어분야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에 따른 대중문화예술 연습생 표준계약 서의 사용률은 2020년 54.9%에 불과했으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 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의 사용률은 57.1%로 집계됨.

이에 현장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내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을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확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 <u>(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u>	제8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
① (생 략)	<u>산)</u>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관
	한 재정지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
	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u> 우대할 수 있다.</u>
② (생 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